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2. 12. 13.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12월 10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2년 12월 10일
- 다. 상정일자 : 제92회 제2차정례회 제10차위원회 (2002. 12. 13)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 관 재

가. 제안이유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이관사무의 효율적인 수행, 주민불편 해소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부서로 2002. 12. 31일까지 존속하도록 되어있는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정착 및 활성화와 주민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해 그 존속기한을 2004. 6. 30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연장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구 본청 기구중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2. 12. 31일에서 2004. 6. 30일까지 1년 6개월 연장함. (안 조례 제 473호 부칙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조례안은 1999년부터 동사무소 기능전환사업이 본격

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관사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부서로 2001. 3. 1일부터 2001. 6. 30일까지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가 설치·운영되었으나, 존속기한이 2002. 12. 31일까지 1차 연장 승인되어 운영하던 중,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이관사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시책추진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정착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2. 12. 24일 서울시장으로부터 2004. 6. 30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존속기한이 2차 연장 승인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

○ 동 건은 한시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에 의하여 존속기한이 현행 2002. 12.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된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4. 6. 30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연장하기 위한 것이며, 부칙 안 제2항에서는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2조제3항 중 "재해별 해당 국장 및 감사담당관(풍수해, 설해 : 건설교통국장, 지진 등 : 감사담당관)"을 "재해별 해당국장(풍수해, 설해, 지진 등 : 건설교통국장)"으로 소관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유남렬 위원) :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면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는가?

○ 답변요지(이관재 총무과장) : 좀 더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주민자치과의 존속이 필요함.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02.12.9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이관사무의 효율적인 수행, 주민불편 해소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부서로 2002.12.31일까지 존속하도록 되어있는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정착 및 활성화와 주민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해 그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연장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 개정골자

구본청 기구중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 연장함.(안 조례 제473호 부칙 제4조)

3. 주요 토의과제

“ 없 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2002.3.25 법률 제6669호) 제102조
- (2)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2002.8.14 대통령령 제17707호) 제6조 및 제10조
- (3)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1997.7.14 내무부령 제714호) 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 의 : 서울특별시 승인 완료(행정13101-6108, 2002.12.04)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마. 기 타

-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473호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4조중 “2002년 12월 31일”을 “2004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재해별 해당국장 및 감사담당관(풍수해, 설해 : 건설교통국장, 지진 등 : 감사담당관)”을 “재해별 해당국장(풍수해, 설해, 지진 등 :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부 칙(2000.12.5 조례 제473호)</p> <p>제1조 내지 제3조(생략)</p> <p>제4조(한시기구)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구분청 지구중 주민 자치과의 존속기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부 칙(2000.12.5 조례 제473호)</p> <p>제1조 내지 제3조(현행과 같음)</p> <p>제4조(한시기구) _____</p> <p>-----</p> <p>-----2004년 6월 30일-----</p>